2011년도
의회운영안내







議

순 창 군 의 회

www.sunchangcouncil.go.kr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는 명예로운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써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순창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하게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창조적인 직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통한 공정한 의견수렴과 지역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하고 협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공약 등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6대 의원현황



공 수 현 의장

- 순창군 다
- 구림면 운남리 694-1
- 전 화 063-652-9300
- 휴대폰 011-671-9301

- 약 력
  - 구림농협 이사
  - 구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남원순창 구림면 지도위원장
  - 제5대 순창군의회 의원



정 봉 주 부의장

- 순창군 가
- 순창읍 순화리 465-1 대신파크 403호
- 전 화 063-653-3817
- 휴대폰 011-391-6746

- 약 력
  - 전남과학대학 기독교영상학과, 방송영상학과 외래교수
  - 국제로타리3670지구 순창로타리클럽31대회장
  - 전주지방법원, 검찰 출입기자 (매일전북신문)
  - 순창군 배드민턴연합회 3대회장
  - 순창사랑봉사단 3대회장



임 예 민 의원

- 순창군 가
- 순창읍 남계리 450
- 전 화 063-653-8585
- 휴대폰 011-622-8585

- 약 력
  - 대한 궁도협회 순창육일정 사두
  -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창지회장
  -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장
  - 순창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라북도 이장단협의회 사무처장
  - 전국 이·통장연합회 감사(2대)
  - 순창농협이사(3대)



한 성 희 의원

- 순창군 나
- 인계면 노동리 67
- 전 화 063-653-0373
- 휴대폰 010-4459-4404

- 약 력
  - 순창농협 초대이사
  - 순창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 순창군농업발전 심의위원
  - 순창라이온스클럽 35대 회장
  - 제3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정 성 균 의원

- 순창군 나
- 동계면 현포리 601-1
- 전 화 063-652-4022
- 휴대폰 011-653-4023

- 약 력
  - 동계 주조장 대표
  - 동계 신협 이사장
  - 강천택시사 대표
  - 매원식품 창업 대표이사
  - 순창군 기업인 교류회장
  - 전주 MBC 경영자문위원



최 영 일 의원

- 순창군 다
- 쌍치면 방산리 46
- 전 화 063-652-1420
- 휴대폰 011-472-0657

- 약 력
  - 순창경찰서 행정발전위원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이사
  - 제5대 순창군의회 의원



신 용 균 의원

- 순창군 다
- 복흥면 정산리 391
- 전 화 063-652-7473
- 휴대폰 010-6338-7473

- 약 력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직
  - 복흥면 주민자치위원장
  - 순창추령장승제전 위원장



이 기 자 의원

- 비례대표
- 순창읍 순화리 204-1
- 전 화 063-653-0880
- 휴대폰 010-9922-0880

- 약 력
  - 순창 적십자 봉사회 회장
  - 순창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 대한적십자 봉사회 순창지구 협의회장
  - 순창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순창읍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淳昌



목 차 Contents

07 순창군의회 연혁

08 의회기구 및 직원 정·현원

09 의회기능

- 자치입법권, 재정통제권, 행정통제권, 기타

12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14 2011년 순창군의 살림규모

15 2011년 의회 운영방침

-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
-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구현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 의정운영 공개로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
-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성 제고

21 2011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23 2010년 의정활동 Focus

27 의회관련 용어



순창군의회 연혁

제1대 의회

- 개 원 일 : 1991. 4. 15
- 재임기간 : 1991. 4. 15 ~ 1995. 6. 30(4년 2월)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박승현, 부의장 김형무
  └후반기 의장 정상환, 부의장 김용선

제2대 의회

- 개 원 일 : 1995. 7. 14
- 재임기간 : 1995. 7. 1 ~ 1998. 6. 30(3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김경곤, 부의장 양장희
  └후반기 의장 박종표, 부의장 김종섭

제3대 의회

- 개 원 일 : 1998. 7. 8
- 재임기간 : 1998. 7. 1 ~ 2002. 6. 30(4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김주곤, 부의장 류승규
  └후반기 의장 강대희, 부의장 한성희

제4대 의회

- 개 원 일 : 2002. 7. 3
- 재임기간 : 2002. 7. 1 ~ 2006. 6. 30(4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이길영, 부의장 최필관
  └후반기 의장 양영수, 부의장 김경섭

제5대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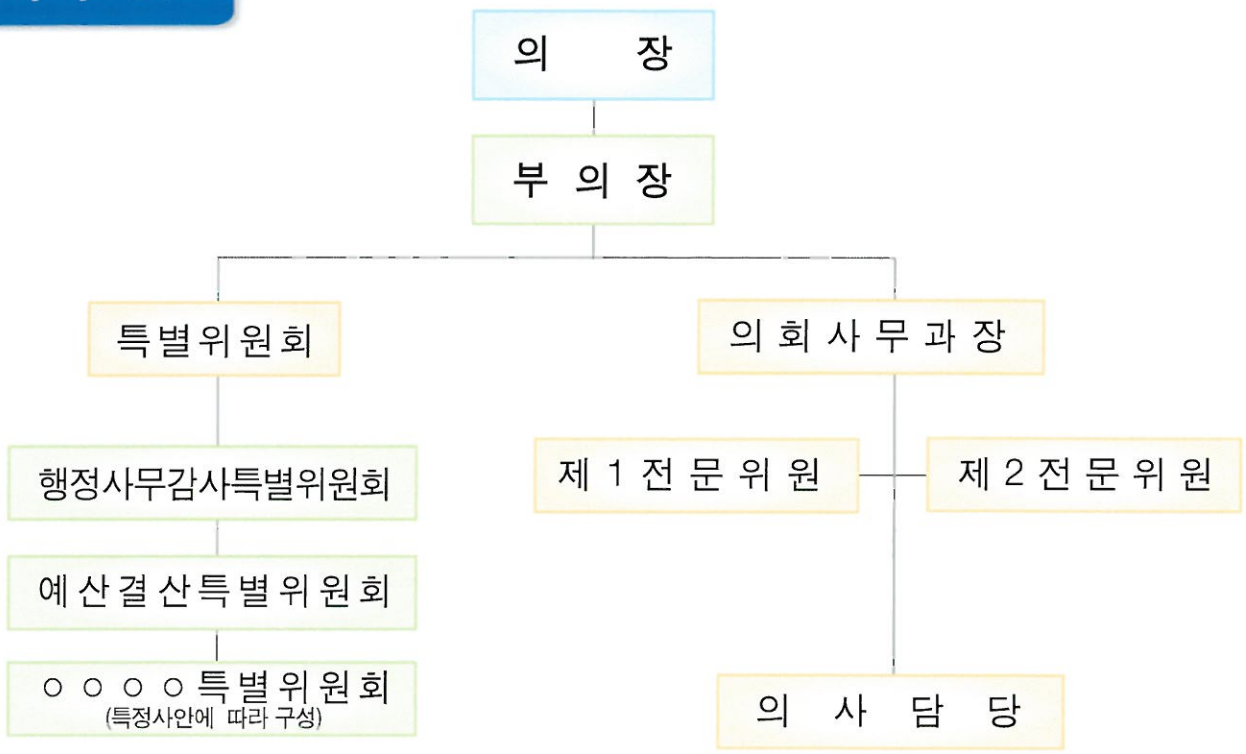
- 개 원 일 : 2006. 7. 4
- 재임기간 : 2006. 7. 1 ~ 2010. 6. 30(4년)
- 의 원 수 : 8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김경섭, 부의장 양승종
  └후반기 의장 양승종, 부의장 권재철

제6대 의회

- 개 원 일 : 2010. 7. 7
- 재임기간 : 2010. 7. 1 ~ 2014. 6. 30(4년)
- 의 원 수 : 8명
- 의 장 단 : 전반기 의장 공수현, 부의장 정봉주

의회기구 및 직원 정·현원

기 구 표



직 원 현 황

구분	계	정규직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비고 (행정근로)
			5급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정원)	15 (15)	12 (12)	3 (3)	1 (1)	3 (2)	0 (1)	1 (0)	2 (1)	2 (1)	0 (3)	1 (1)	2 (2)

의 회 기 능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임

자치입법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서 내용에 따라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음.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조례안처리절차 |

발 의	심 사	의 결	이 송	공 포
• 군 수 • 재적의원 1/5 이상	• 조 례 심 사 특별위원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20일 이내 군수가 공표

의 회 기 능

재정통제권

▣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로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집행 후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군 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 산 안 심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심 사 · 의 결 (본 회 의)	•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 결산승인 과정 |

승 인 요 구 (군 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6월말까지 결산승인서 제출
↓	
결 산 안 심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 사 · 의 결 승 인 (본 회 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의 회 기 능

행정통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1/3이상의 서면발의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기 타

▣ 군정질문

- 순창군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순창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임

▣ 5분자유발언

-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군정 현안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 요 활 동 사 항

○ 회기운영 : 8회 77일(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6회 23일)

○ 안건처리 : 117건(조례58, 결의32, 예산4, 결산1, 동의9, 기타13)

○ 주요사업장실태조사 : 하반기 1회, 34개소

○ 특별위원회 운영 : 6회 45일

– 예산결산 4회 30일, 군정실태조사 1회 8일, 행정사무감사 1회 7일

○ 의원간담회 운영 : 25회(매월 5, 15, 25일)

성 과

♣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방법 획기적 개선

-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 : 401,685천원(47개 단체)
- 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회단체 보조금 : 200,800천원(47개 단체)

※ 그동안 지역내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심사를 하고자 전국 최초로 보조금 수혜관련 사회단체장을 의회에 출석토록 하여 지난해 보조금 정산서, 2011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음

♣ 2011년 예산안 엄중심사를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2,175,600천원



♣ 안건심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 2건
- 집행부 발의조례 제 · 개정 수정의결 : 14건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입법권에 적용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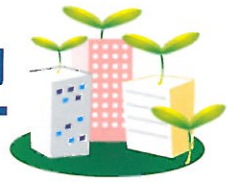
- 실과 업무보고 현장청취 : 1회 17개 사업장 방문
- 주요사업 현장실태조사 : 11개 읍면 34개 사업장 방문

※ 시정 · 개선 등 지적사항 : 22개 사업장 52건

반 성

-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행사 등 외적 변경요인으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함
-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 운영시 일반 군민들의 의회 방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도 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홍보대책 마련 필요)
- 공직선거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군민 실생활에 파고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자주세원 발굴, 비현실적인 조례 정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2011년도 순창군의 살림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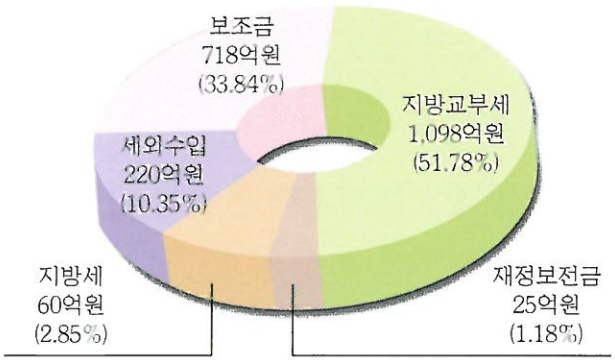


총 예산규모 : 2,2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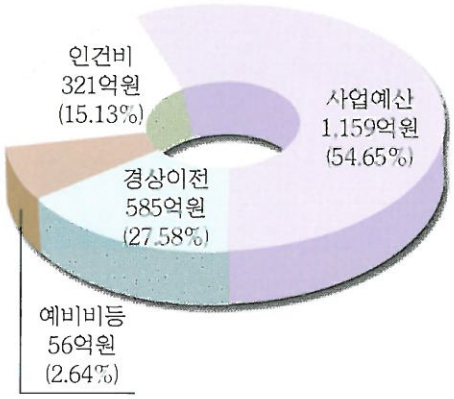
- ○ 일 반 회 계 – 2,121억원
- ○ 특 별 회 계 – 149억원

일반회계 : 2,121억원

세 입



세 출



특별회계 : 149억원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84억원	4 억원	60억원	1억원

2011년도 의회 운영방침



열린의회·알찬의정

- 주민참여 확대로 신뢰구축
- 전문성 제고로 의회역량 강화
- 내실있는 회기운영
- 생활체감의 의정활동

중점추진시책

-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
-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구현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의정운영 공개로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
-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성 제고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

-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제시로 내실있는 자치발전 도모
- 행정에 대한 사전 · 사후적 통제로 시행착오 사전예방

□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 정책 대안자로서의 역할 : 군정의 발전방안 제시
- ○ 미래지향적인 순창발전 도모 : 5분 발언 및 정책아이템 제안
- ○ 현안사업의 추진단계별 점검 : 문제점 사전차단 및 개선요구
- ○ 주민의 애로 · 숙원사업 청취 : 현장조사특위 연2회 구성실시

□ 사전적 감시 · 견제 활동

- ○ 예산편성 단계부터 통제기능 강화
  - 경상적 예산 편성지양,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적용
- ○ 실·과·단·소·원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후 대안제시

□ 사후적 감시 · 견제 활동

- ○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지 : 예산낭비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연1회, 11월중)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

- 현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정 활성화
- 주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민본행정 구현

□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열린의정 실현

- ○ 진솔하고 투명한 의정공개 : 의정설명 및 보고회
- ○ 생생하고 여과 없는 민의 수렴 : 사업현장 방문, 의원간담회 등
- ○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 : 의정민원 상담실 운영
- ○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

□ 민원발생 현장확인

- ○ 집단민원 발생지역 현장확인 : 조사특위 구성 운영
- ○ 군민적 숙원사업 적극적 대응 : 결의문, 건의문 채택
- ○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 해결책 강구 : 행정과 의회 연석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으로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 주민의 뜻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정정책 방향 제시

□ 연간회기 일수 : 90일

□ 정례회 운영 : 연2회

- 제1차 정례회(7월중) :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
- 제2차 정례회(11월중)
  -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결산추경예산안 및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 의결
  -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의결

□ 임시회 운영 : 수시

-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군수의 소집요구시 수시집회
- 주요처리 안건
  -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 답변
  - 군정주요사업현장 실태조사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의정운영 공개로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

- 의정 운영상황 공개 확대로 주민의 의정참여 활성화
-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의정으로 주민공감대 형성

□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각적인 의정활동 공개

- ○ 인터넷 의정방송을 통하여 회의진행 상황 실시간 방송
- ○ 회의 녹화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 상시 공개
- ○ 회의장 방청 및 의회 청사 방문기회 상시 제공

□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 ○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 농한기 이용 의원별 마을 순회
  - 순창군의회 운영안내 책자 : 연 1회 / 700부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등에 의정활동 상황 및 기획보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성 제고

- 교육 및 연찬으로 자치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의회상 구현
- 견문확대 및 다양한 정보습득으로 선진 의원상 정립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

- ○ 국회 및 전문교육기관 입소
- ○ 자치이론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기법 등 실무능력배양

□ 선진의회 · 시설벤치마킹 실시

- ○ 의회운영사례 및 주요시책 등 상호 정보교환

□ 의정자문제 실시

- ○ 집행부의 신규사업, 국가예산확보, 기업유치 등을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및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모델 구축





2011년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상 반 기]

월별	의 정 활 동 주 요 내 용	기 간 (28일)
1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74회 임시회 (1.12 ~ 1.17) ┌ 2011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 청취 └ 기타 일반안건 심사	6일
2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읍면 마을순회 의정설명회 개최(의원별 추진) ●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	
3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75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3.11 ~ 3.17)	7일
4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 국내연수(국회 등 전문기관 입소) ● 제176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4.22 ~ 4.26)	5일
5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77회 임시회 (5.16 ~ 5.25) ┌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10일
6월	● 의원간담회 개최 ●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20일)	

2011년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하 반 기]

월별	의 정 활 동 주 요 내 용	기 간 (62일)
7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 (7.5 ~ 7.12) ┌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 └ 기타 일반안건 심사	8일
8월	● 의원간담회 개최	
9월	● 의원간담회 개최 ●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 제179회 임시회 (9.16 ~ 9.30) ┌ 2011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15일
10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선진의회 및 시설 벤치마킹 ● 제180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10.26 ~ 10.31)	6일
11월 ~ 12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 워크샵 개최 ● 제181회 제2차 정례회 (11.18 ~ 12.20) ┌ 2012년도 예산안 ├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11년도 추경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 기타 일반안건	33일

※ 사정상 회기일정과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10년 의정활동 Focus

제6대 의회개원



▲ 충혼탑 참배



▲ 제6대 순창군의회 개원식

순창군정 업무보고



▲ 실과별 업무보고



▲ 장류식품사업소 방문 현황청취



▲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어물전)



▲ 건강장수연구소 건립현장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2차 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본회의장)



▲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위원회실)



▲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강천사)



▲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팔덕면 서흥리)



▲ 2011년도 예산안 심사(위원회실)



▲ 2010년도 추경예산안 관련사업장

하반기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



▲ 경천 생태하천



▲ 쌍치면 블루베리 단지



▲ 훈몽제



▲ 재해위험지구(둥계면 구미리)



▲ 팔덕면 소하천 준설현장

기타 의정활동



▲ 수해현장 방문



▲ 의원간담회



▲ 의정연찬회



▲ 의원연수



▲ 불우이웃시설 방문(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집)



▲ 사랑의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의회관련 용어

의사관련용어

용 어	해 설
집 회 (集 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
회 기 (會 期)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하는 일정 기간
개 의 (開 議)	• 당일회의를 시작하는 것
유 회 (流 會)	• 개의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것
산 회 (散 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정 회 (停 會)	•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
속 개 (續 開)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휴 회 (休 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재 개 (再 開)	• 본회의 휴회기간중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을 위하여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동 의 (動 議)	• 회의 진행이나 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이며, 이 동의는 회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재 청 (再 請)	•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외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의제가 됨
부 의 (附 議)	•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상 정 (上 程)	•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

의회관련 용어

의안관련용어

용 어	해 설
의 안 (議 案)	• 특정한 형식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① 안을 갖추면 서면으로 제출 ② 안에 대하여 수정 가능 ③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에서 제출
안 건 (案 件)	•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처리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 기타사안 포함)
발 의 (發 議)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 출 (提 出)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동의안(同意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
수정안(修正案)	•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
승인안(承認案)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 또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사전에 본의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一事不再議의原則)	•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제 안 설 명 (提 案 說 明)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

의회관련 용어

예산관련용어

용 어	해 설
회 계 년 도 (會 計 年 度)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기간 -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세 입 (歲 入)	• 일정회계년도에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있음
세 출 (歲 出)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일체의 지출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 등이 있음
일 반 회 계 (一 般 會 計)	•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特 別 會 計)	•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 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 산 (本 豫 算)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 정 예 산 (修 正 豫 算)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의회관련 용어

예산관련용어

용 어	해 설
기 금 (基金)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 운영하는 특정자금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예산과목 (豫算科目)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분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事故移越費)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속비(繼續費)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 급(支給)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支出)	• 향후 현금 또는 현물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
예산안(豫算案)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년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 한 것
예산서(豫算書)	• 지방의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순창군의 상징

SunChang-gun Council

군화



◀ 백일홍

백일동안 지지 않는 붉은 꽃
백일동안 지지 않는 붉은 꽃의 의연한 생명력은
군민의 정신을 상징하고 지역곳곳에 분포되어
친밀감을 주는 순창의 꽃

군조



◀ 까 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희망의 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답고
정겨움이 넘치는 길조로
봉사와 협동정신, 새희망을 상징하는 순창의 새

군목



◀ 느티나무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아주는 신앙목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아주는 토속 신앙목으로
짙푸른 녹음과 시원한 그늘로 군민의 사랑을 받으며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순창의 나무

의회 방청 안내

순창군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군민은 누구라도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듣고 보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와 성원, 격려를 해주시면 큰힘이 되겠습니다.
방청하실 분은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여
방청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011년도 의회 운영안내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순 창 군 의 회

www.sunchangcouncil.go.kr

우)595-805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 의장실 : 063) 650-1010 / 부의장실 : 063) 650-1020 / 사무과장 : 063) 650-1030

전문위원 : 063) 650-1040,1050 / 의회사무과 : 063) 650-1031,1041 / FAX : 063) 652-6782